

우송대학교 학칙

제정	2008. 11.	개정	2016. 10.
개정	2009. 7.	개정	2017. 02.
개정	2009. 9.	개정	2017. 05.
개정	2009. 11.	개정	2017. 07.
개정	2010. 3.	개정	2018. 01.
개정	2010. 5.	개정	2018. 10.
개정	2010. 9.	개정	2018. 12.
개정	2010. 10.	개정	2018. 12.
개정	2010. 12.	개정	2019. 03.
개정	2011. 2.	개정	2019. 04.
개정	2011. 5.	개정	2019. 07.
개정	2011. 8.	개정	2019. 08.
개정	2011. 11.		
개정	2012. 1.		
개정	2012. 3.		
개정	2012. 11.		
개정	2013. 1.		
개정	2013. 4.		
개정	2014. 1.		
개정	2014. 4.		
개정	2014. 5.		
개정	2014. 11.		
개정	2015. 2.		
개정	2015. 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학사 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적) 본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자립, 단정, 독행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학술연구 및 사회봉사를 통해 자아실현과 국가발전 및 인류 공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일반대학원”이라 함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3. “특수대학원”이라 함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4. “전임교수”라 함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3.01.01)
5. “복수전공”이라 함은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등록금”이라 함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7. “연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여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연구하는 과정으로서 학위는 수여하지 아니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2장 대학 조직

제4조 (단과대학·학과(부) 및 학생정원) ①본교에 철도물류대학,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보건복지대학, 호텔외식조리대학, 엔디컷 국제대학,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Sol International School, 교양교육원을 둔다.(개정 2012.03.02, 2017.02.28, 2019.03.05, 2019.04.23.)

②전 항의 각 단과대학별 설치 학과(부)는【별표1】과 같다.(개정 2012.03.02, 2012.11.16)

③학과(부) 모집단위가 변동된 경우, 학생의 소속은 【별표1】에 규정된 학과(부)로 본다.
(개정 2013.04.19, 2015.02.28)

④각 학과(부)별 학생정원은【별표2】와 같다. 다만,「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04.19)

⑤전항의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5조 (대학원) ①본교에는 일반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인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철도융합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Culture Technology융합대학원(이하“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이하“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1.11.28, 2015.02.28, 2015.12.31, 2017.02.28)

②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와 각 학과별 모집정원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1.11.28, 2012.01.16, 2013.04.19, 2014.01.22, 2015.12.31)

③ 각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부)”라 한다)를 본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학과(부) 등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과(부)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 또는 유사한 학과(부)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부)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본교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계약학과(부)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운영경비, 등록금,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부)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특별과정 및 공개강좌) ①본교는 학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특정의 직종, 직무 또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특별과정,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수업 및 재학연한

제8조 (수업 및 재학연한) ①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2018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및 같은 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부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1.16, 2014.01.22, 2015.12.31, 2019.03.05)

1. (삭제, 2019.03.05)

2. (삭제, 2019.03.05)

②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⑤편입학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조기졸업) ①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0.5년) 단축하여 조기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2019.03.05)

②(삭제, 2019.03.05)

③조기졸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학년, 학기 및 학습형태, 수업일수 및 휴업일수

제10조 (학년) ①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03.05)

② (삭제, 2015.12.31)

③ (삭제, 2015.02.28)

제11조 (학기 및 학습형태) ①본교의 학기는 1년 4학기제로 하고, 매년 학기는 제1학기, 여름학기, 제2학기, 겨울학기로 구분 하며, 학기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매 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②학습형태는 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과목별 학습은 출석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출석학습 외에 원격수업 및 자율학습, 산업체 현장학습, 과제학습 등에 의하여 당해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28, 2017.05.02)

③출석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목의 수업시간은 주간 또는 야간에 편성 할 수 있다.(개정 2016.10.28)

④학생의 현장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학기(인턴십)를 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에서 정한 학기이외에 학생의 전공능력함양 및 취업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자기개발학기 및 커리어학기 등의 특별학기를 둘 수 있으며, 자기개발학기는 제1학기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학기에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0.28, 2019.03.05)

⑥학기 및 학습형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10.28)

제12조 (수업일수) ①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30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9.03.05)

②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3조 (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토요일, 일요일

4. 개교기념일

5. 국정공휴일

②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 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③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과할 수 있다.

제5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14조 (입학시기)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6조 (입학지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입학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최종학교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그 예정 증명서 및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한 서류

제17조 (입학전형 및 입시관리위원회) ①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면접, 신체검사, 실기고사 및 인성검사성적, 자기소개서 등 교과 성적 이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2, 3학년 편입학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본교의 입시전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 2(선행학습 영향평가) ①제17조의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②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18조 (입학허가 및 등록) ①입학허가는 입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편입학) ①전문대학졸업자, 대학교(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학년 수료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본교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3학년 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2학년 과정에 편입학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과정 수료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한다.

②편입학 전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입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 2 (자녀의 입학신고) ①본교 교원과 직원의 자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 및 18조에 따라 신·편입학 한 경우
2. 제21조에 따라 재입학 한 경우

②제1항의 신고절차 및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9.7.4)

제20조 (전과) ②2학년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하 '전과'라 함)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17.07.13)

②전과의 시기 및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16, 2014.05.16, 2015.12.31, 2017.07.13)

제21조 (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한 학기(여름·겨울학기제외)를 경과한 후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 또는 학부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3.04.19, 2015.12.31)

②재입학은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자의 자격과 재입학의 방법 및 취득학점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2조 (휴학) 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04.21, 2015.12.31)

②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가망이 없거나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직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에 따른 군입대 휴학기간 및 출산휴학, 질병휴학의 기간은 제3항에서 정한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15.12.31)

⑤창업휴학의 경우 1회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일반휴학을 포함하여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2.31)

⑥기타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23조 (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본교가 정하는 복학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학년 또는 그 과목의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은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③기타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31)

제24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제적) ①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졸업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기타 제54조 및 제55에 의한 징계 중 제적 처벌을 받은 자와 제56조에 의한 학사제적에 해당하는 자

②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7장 교과와 이수

제26조 (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 교직교과, 전공교과(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포함한다.)로 구분하고, 교양 및 전공교과는 이를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04.21, 2015.02.28)

②교과목의 개설, 교과 및 이수의 구분, 실험실습의 부과, 학점배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교직교과목을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학점단위) ①각 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②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01.22, 2015.12.31)

③자율학습, 타 학교 등의 학점인정, 특별평가, 실습학기(인턴십) 등과 관련한 학점 및 기타 학점단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31)

제29조 (이수 또는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 ①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13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18학년도 이전 신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부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01.16, 2015.02.28, 2015.12.31, 2019.03.05)

② (삭제, 2015.02.28.)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학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④기타 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필수학점 등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30조 (부전공, 복수전공 및 다전공) ①학생은 재학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어느 특정한 전공 교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주전공과 함께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개정 2015.12.31)

③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어느 특정한 전공 교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42학점 이상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주전공과 함께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개정 2015.12.31)

④다전공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당해 학과(부)의 최소전공이수학점과 동일하며, 다전공자에게는 제1전공과 제2전공 및 제3전공을 전부 이수한 때에는 2, 3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신설 2013.04.19)

⑤부전공, 복수전공 및 다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04.19)

제30조의2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의무이수) ①201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0., 2015.02.28, 2015.12.31)

②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10, 2015.02.28)

③학군단으로 선발이 확정된 자의 경우에는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 한다. 다만, 학군단 중도 포기 및 탈락자의 경우 졸업 전까지 본조 제1항에 따라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2.11.16)

제31조 (연계전공, 한국어전공, 자기설계전공) ①학부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전공을 두어 이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는 자기설계전공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08.09, 2015.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연계전공, 한국어전공, 자기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32조 (학·석사연계과정) ①학문의 연속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학·석사 학위 연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33조 (수강신청 및 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해당학기에 학습할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개정 2015.12.31)

②학생은 1·2학기는 각 18학점 이내에서, 여름·겨울학기는 각 3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다만, 학과특성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기별 수강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2.01.16, 2015.02.28, 2015.12.31, 2019.7.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편입생과 성적우수자 및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④수강신청은 연도별 교육과정에 순위에 의하되, 수학생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기초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⑤기타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31)

⑥ (삭제, 2015.12.31)

⑦ 학생은 부모가 본교의 교원(비전임교원을 포함한다. 제38조의2에서도 같다)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부모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9.7.4)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이수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 강의를 수강한 경우 해당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7.4)

제34조 (대학원 개설교과목 수강) ①제32조에 따른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승인을 받은 학부학생에 한하여 연간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5.02.28, 2015.12.31)

② (삭제, 2015.12.31)

제35조 (수강과목의 변경 및 철회) ①수강과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③기타 수강과목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9장 성적평가, 이수 및 졸업

제36조 (학업성적의 평가) ①학업성적의 평가는 교과목 단위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매 학기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③ (삭제, 2015.12.31)

④ (삭제, 2015.12.31)

⑤교과목 단위의 출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였을 때에는 당해 그 교과목의 학점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교과목의 성적을 낙제(F)로 처리한다.

⑥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따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⑦기타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37조 (성적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교에 성적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12.31)

②성적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 (성적) ①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과목별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2011.05.20, 2013.04.19, 2015.12.31)

등급	평점	비고
A ⁺	4.5	급
A ⁰	4.0	급
B ⁺	3.5	급
B ⁰	3.0	급
C ⁺	2.5	급
C ⁰	2.0	급
D ⁺	1.5	급
D ⁰	1.0	급
P	-	이수
I	-	보류
F	0	낙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수/미이수로 구분하며, 이수한 경우 “P” 미이수한 경우 “F”로 표시 하고 평점은 부여하지 않는다.(신설 2015.12.31)

④기타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38조의2 (교원-자녀 간 수강 및 평가의 자체점검) ①제33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부모 강의를 수강한 경우 수강 및 평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위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 우송학원 정관에 따라 처리한다.

(조신설 2019.7.4)

제39조 (타 학교 등의 학점인정) ①본교에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31)

②다른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 연구 또는 실습 등은 관련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31)

③재학 중 해외연수, 국제교류, 사회봉사, 현장실습, 외국어 및 자격증 등의 과정을 완료하거나 취득한 학생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본교에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재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한 후 본교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하며, 기타 학점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31)

⑤본교 입학 전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대학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병역법 제73조」에 의하여 군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거나, 본 대학과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의 원격강의(방송·통신 또는 인터넷)를 수강하여 이수한 경우 「병역법 제73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고

등교육법 제23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기당(1,2학기)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의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03)

⑦제39조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등록금납부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03, 2015.12.31)

제40조 (성적의 정정 및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교수의 착오 또는 학생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다만, 교수의 착오로 인한 성적정정에는 당해 교수의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31)

제41조 (이수증) ①본교에서 시행한 특별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점은행제 등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관련 이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기타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41조의 2 (수료기준) ①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신설 2015.12.31)

1. 1학년 :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38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2. 2학년 : 2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77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3. 3학년 : 3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110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4. 4학년 : 4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142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과특성에 따라 4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료이수학점의 범위를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③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료기준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5.12.31)

④기타 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42조 (졸업 종합시험) ①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졸업종합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04.19, 2015.12.31)

② (삭제, 2015.12.31)

③ (삭제, 2015.12.31)

④졸업종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 (졸업 및 학위) ①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종합시험 등에 합격한 자 중에서 전 교과목의 총 평점평균이 1.5이상인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총 평점평균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3.04.19, 2015.12.31)

②제1항에 의한 학사학위는 전공에 따라 【별표 4】과 같이 구분한다.

③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3.04.19)

④졸업증서 또는 학위는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개정 2013.04.19)

⑤기타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04.19)

제43조의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학사과정의 학생은 제29조 및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2014.11.03, 2018.12.21)

②기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16, 2018.12.21)

제43조의3 (학위수여 취소) ①학사학위가 부정하게 수여된 경우 총장은 이를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15.02.28)

②학위수여 취소사항 심의는 「성적평가 심의 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한다.(신설 2015.02.28)

③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02.28)

제10장 학생활동

제44조 (총학생회) ①학생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창의적인 학구능력을 배양하고 교시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교에 총학생회를 둔다.

②본교 학생은 본교에 등록함과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기간 중에는 그 자격이 정지되고,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총학생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총학생회 회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④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45조 (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 방법) ①총학생회(본교에서 인정하는 학생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장, 부회장 및 기타 간부는 총학생회 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한다.

②학생대표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07.13, 2018.10.01)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력이 있고 선거규정 제3조에 해당되는 자
2. 본 대학에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여름학기까지 전 학기를 등록한 학생으로서 3학년 여름학기까지 총 100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매 학년 1학기과 여름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20학점 및 2학기과 겨울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3. 2호의 기준에 해당하고 3학년 2학기에 18학점 이상 등록을 필한 자
4. 3학년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5. 위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에 회부 중이 아닌 자로서 학사부총장 또는 학장, 소속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7.07.13)

③ (삭제, 2017.07.13)

④ (삭제, 2017.07.13)

⑤총학생회의 회장, 부회장, 기타 간부는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총학생회의 정·부회장 및 간부로 선임된 자는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⑦총장은 총학생회의 구성 또는 활동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간부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03.05)

⑧총학생회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 이하 간부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⑨총학생회의 요구 및 특이사항 발생 시, 학생지도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사안에 대해 조정 결정한다.(신설 2019.03.05)

제46조 (총학생회비) ①총학생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총학생회비의 수납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는 학교의 승인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학생활동 및 단체조직) ①총학생회에 소속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는 그 목적 외의 활동을 금한다.

③총학생회 등 재학생의 단체활동은 교육적 목적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총학생회 집회행사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48조 (학생활동제한) ①(삭제, 2019.03.05)

②학생은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학성기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교육 및 학내 질서유지에 배치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9조 (학생상담 및 지도) ①총장은 총학생회 활동의 제반지도를 위하여 총학생회 지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총장은 각 학과(부)에 지도교수를 두어 학생의 개별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하며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시행하도록 한다.

제50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또는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및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초청

제51조 (간행물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부정기의 모든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편집·제작되어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제52조 (처벌) ①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징계 또는 제적된 자(타교에서 징계 또는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52조의1 (집단활동) ① 학생들의 집단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입생을 위한 학과 및 학교 오리엔테이션
2. 학과, 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주관 활동
3.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축제, 체육대회
4. 기타 총장이 인정한 집단 활동

②학생들의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학생대표는 집단활동계획서를 활동개시일 15일 전까지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부)장은 지체 없이 총장에게 집단활동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 시행일 이전에 활동이 계획된 제1항제2호의 동아리주관 활동의 경우 집단활동계획이 보고된 것으로 본다.

③총장은 활동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행사(활동)를 주관하는 학생대표와 책임지도교수(학생대표와 책임지도교수를 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 시행일 이전에 지도교수가 정해진 제1항제2호의 동아리주관 활동의 경우 책임자가 정해진 것으로 본다.

④집단활동 참여자 및 이를 주관하는 책임자는 집단활동 기간동안 학생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에는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⑤집단활동 중 인권침해 사고 등이 발생 한 때에는 인권침해 행위자와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책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제5항에 해당하는 집단활동에 대하여는 운영중지, 폐쇄, 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6.10.28)

제11장 포상과 징계

제53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4조 (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한 행동을 한 자
4.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성취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불성실 한 자
6.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7. 건전한 대학생활에 반하는 인권침해행위를 한 자(신설 2016.10.28)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55조 (학사경고) ①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1학기 및 여름학기의 성적합 또는 2학기 및 겨울학기의 성적합의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②제1항에 의거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보증인과 소속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소속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가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6조 (학사제적)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는 학사제적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2장 납입금

제57조 (납입금) ①학생은 매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지정된 등록기일까지 소정의 수업료와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입기일과 납입금액은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고시한다.

③납입한 납입금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57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신설 2010.12.10)

②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8조 (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시간제 등록학생, 장애학생

제59조 (위탁생) 정부 기타 기관의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9조의2 (군 위탁생) 학·군 제휴 협약에 의거 군 위탁생으로 선발된 자는 협약내용에 준하여 시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28)

제60조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으로서 제4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학정원 외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61조 (시간제 등록학생) ①본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 등록학생”이라 한다)를 1·2학기 초 30일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②시간제 등록학생의 자격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시간제 등록학생의 선발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이내로 한다.

④시간제 등록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시간제 등록학생은 매 학기 여름·겨울학기를 포함하여 전일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취득 기준학점의 1/2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⑥시간제 등록학생의 선발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의 1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교육활동편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11.16.)

제14장 장학금

제62조 (장학금)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평균 B⁺이상의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평균 C⁺이상의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②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 학내·외에서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실습장학생 및 봉사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④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장 교수회

제63조(교수회) ①본교의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개정 2013.01.01.)

②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1.01.)

③교수회에는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추천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01.01, 2015.12.31.)

④본교의 교수회는 교수협의회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3.01.01.)

제64조(소집 및 심의 등) ①교수회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교수회 의장의 선출과 세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수회에서 자율로 정한다.(개정 2015.12.31.)

③교수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에서 의결에 의한다.(개정 2015.12.31.)

④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15.12.31.)

1. 본교 학칙 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교육, 학생지도, 연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교원의 권익·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총장이 부의하는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장 교직원 및 직제

제65조 (교직원) ①본교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와 직원(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임시직 등) 및 조교(행정조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개정 2013.01.01, 2019.08.08)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 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개정 2019.08.08)

④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⑥산업체 경력자로 10년 이상의 경력자의 경우 채용 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임용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지원의 활동을 추진한다.(개정 2012.01.16)

⑦기존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경력에 관계없이 산학협력중점교수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1.16)

⑧6과 7항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트랙으로 평가받으며, 책임시수 30% 이상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2.01.16.)

제65조의2 (강사) 제65조제1항의 강사 임용기준과 절차 및 계약기간, 임금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9.08.08.)

제66조 (초빙·겸임교원 등) ①본교에는 전임교원 외에 초빙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수, 객원교수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08.08)

②초빙 및 겸임교원의 경우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1.16)

③2항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책임시수 30% 이상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2.01.16)

④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 (직제) ①본교에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각 부서에는 부서의 장을 두고,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본교에 설치된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④ (삭제 2014.11.03)

⑤학생군사교육단을 총장 직속으로 둔다.(신설 2012.11.16.)

⑥예비군 연대본부를 총장 직속으로 둔다.(신설 2013.04.19)

⑦각 부서의 직제 및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16, 2013.04.19)

제17장 각종 위원회

제68조 (교무위원회) ①본교의 중요정책 및 학사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총장, 행정부총장, 기획·평가부총장, 우송특성화교육본부장, 각처의 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은 사안에 따라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여 협의 또는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2013.01.01, 2014.11.03, 2015.02.28, 2015.12.31, 2016.10.28, 2017.02.28)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 기관이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④총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교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 (대학원위원회) ①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학사부총장 또는 학장, 그리고 학과의 교수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개정 2018.1.30, 2018.10.01)

③ 위원회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위과정의 수료인정, 명예박사 등 학위수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신설, 폐지와 학생정원 등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및 위원회에 관한 제 규칙, 시행 세칙 등의 제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⑥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 (산학협력위원회) ①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교 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된 산학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 (타 위원회)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장 부속시설

제72조 (부속 및 부설기관) ①본교에는 교육·연구 등을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부속 및 부설기관과 시설을 두며,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3.01)

②본교에는 필요한 부설연구기관을 둔다.

③본교에는 다음의 부속 교육기관을 둔다.

1. 평생교육원

2. 외국어교육원
3. 한국어교육원
4. 우송IT교육센터
5. 우송조리아카데미
6. 우송서비스아카데미
7. 우송비즈니스교육센터
8. 공자아카데미
9. 솔브릿지-국제경영교육원
10. 우송디젠틸도아카데미
11. 우송보건복지아카데미
12. 우송유치원
13. 솔메디컬센터

④총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부속시설 등 이외의 부속시설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들 부속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3조 (산학협력단) ①「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본교에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본조에서는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본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 법인정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3조의 2 (학교기업)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개정 2012.11.16, 2017.07.13, 2019.7.4)

명 칭	관련학과(부)	사업종류	소재지(영업장소)
술 반	외식조리학부 / 외식조리영양학부 / 호텔관광경영학과 / 글로벌조리학과	음식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 영업장소 :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31번길 8-17 1층(자양동) ·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5번길 66-1, 1층(자양동, 어학센터)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SICA2층)
술파인	외식조리학부 / 외식조리영양학부 / 호텔관광경영학과 / 글로벌조리학과	음식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 영업장소 :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171(자양동, 우송타워 13층)

제73조의 3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학칙 제28조에 준하여 시행한다.(신설 2010.05.14)

②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0.05.14)

제73조의 4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신설 2010.05.14)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0.05.14)

③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0.05.14)

④교직원, 학교기업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05.14)

⑤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0.05.14.)

제19장 학칙개정 및 시행세칙

제74조 (학칙개정) ①본 대학교의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 의결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공포한다. (개정 2015.02.28, 2018.12.27)

②관련법령, 정관 등의 상위 규범의 개정사항의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위 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2.28)

③ (삭제, 2015.02.28)

④ (삭제, 2015.02.28)

⑤ (삭제, 2015.02.28)

제75조 (규정의 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우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종전의 학칙을 2014학년도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우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종전의 학칙을 2014학년도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설치학과(부) 및 모집인원은 2010학년도 신입학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우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종전의 학칙을 2014학년도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설치학과(부) 및 모집인원은 2010학년도 신입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설치학과(부) 및 모집인원은 2011학년도 신입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학칙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1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16)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학칙 제33조 제3항 제3호는 2013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부터 적용한다.

②학칙 제 61조의 1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01. 0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제63조,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4. 1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30조, 제38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67조 제6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1. 2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조 제1항, 제28조 제2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은 학칙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5조 제2항, 【별표 3】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2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6조 제1항, 【별표 4】)은 학칙개정일로부터 시행하며, ‘International Business학부’의 명칭은 ‘솔브릿지경영학부’로 변경되어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제22조 제1항, 제3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5. 16)

제1조 (시행일) ① ‘솔브릿지국제대학’에서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으로 명칭변경(【별표 1】, 【별표 2】, 【별표 4】)은 학칙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제20조 제2항)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0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67조제4항, 제68조제2항, 【별표 1-1】, 【별표 2-1】, 【별표 4-1】)은 학칙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① 이 개정 학칙(제39조 제6항 및 제7항)은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제43조의2)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2.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26조, 제30조의2, 제33조제2항, 제43조의3, 제64조, 제68조제2항, 제74조, 【별표 3】)은 학칙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1. 철도물류대학 철도건설시스템학과를 철도건설시스템학부로
2. 디지털미디어대학 컴퓨터정보학과를 IT융합학부 컴퓨터정보·보안전공으로
3.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IT경영학부를 디지털미디어대학 IT융합학부 IT경영전공으로
4. 디지털미디어대학 미디어디자인학부를 미디어디자인학과로
5. 디지털미디어대학 건축디자인학과를 건축공학으로
6. 보건복지대학 스포츠건강관리학과를 스포츠건강재활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으로
7. 보건복지대학 스포츠재활학과를 스포츠건강재활학부 스포츠재활전공으로
8. 보건복지대학 뷰티디자인학과를 뷰티디자인경영학과로
9. 호텔외식조리대학 외식조리학부를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으로
10. 호텔외식조리대학 글로벌한식조리학과를 외식조리학부 글로벌한식조리전공으로
11. 호텔외식조리대학 호텔관광경영학과를 호텔관광경영학부로
12.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글로벌서비스경영학부와 국제경영학부를 국제경영학부로
13.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글로벌자유전공을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으로
14.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Global Dual Degree학부 중국전공을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중국전공으로
15. 솔아시아서비스융합학부 자산관리학부를 금융·세무경영학과로
16.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International Business학부를 솔브릿지경영학부로

② 제10조와 제29조의 적용특례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 2012.01.16. 개정 이전 규정을, 2010

학년에서 2014학년도 입학자에게 2012.01.16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 12. 31)

제1조 (시행일) ①이 개정 학칙(제8조제1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7조의 2,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0조제1항내지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 제32조의1항, 제33조제1항, 제33조제3항내지제6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제1항내지제3항, 제43조제1항, 【별표 1】)은 학칙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①제29조의 적용특례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졸업학점은 아래와 같이 개정 전 규정에 적용 받는다.

1.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졸업학점은 140학점으로 한다.
2. 201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까지 입학한 학생의 졸업학점은 154학점으로 한다.
3. 2015학년도 입학자의 졸업학점은 148학점으로 한다.

②제33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2015학년도 신입생의 여름·겨울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최대 5학점까지로 한다.
2. 2014학년도 이전 신입생의 여름·겨울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로 한다.
3. 편입학 및 재입학자의 경우 신입학생의 동일한 학년 학기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015학년도 이전 편입학 및 재입학자는 신입학생의 최대 수강가능 학점외에 2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③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 학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제68조의 개정 학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제25조, 제56조의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이 학칙 시행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1. 디지털미디어대학 IT융합학부 IT경영전공을 스마트IT·보안전공으로
2. 디지털미디어대학 게임멀티미디어학과를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게임멀티미디어전공으로
3. 디지털미디어대학 미디어디자인학과를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미디어디자인전공으로
4. 디지털미디어대학 방송미디어학부(방송제작전공)를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영상콘텐츠전공으로
5. 디지털미디어대학 방송미디어학부(미디어융합전공)를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로
6. 보건복지대학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를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로
7. 호텔외식조리대학 외식산업경영학과를 외식조리학부 외식산업경영전공으로
8.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국제경영학부 국제경영전공을 국제경영학과로
9.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을 글로벌자유전공학과로
10.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중국전공을 중국듀얼디그리학과로

부 칙(2016. 10. 28)

제1조 (시행일) ①이 개정 학칙(제52조의 1, 제54조)은 학칙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개정 학칙(【별표 1】, 【별표 2】, 【별표 4】)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1. 철도물류대학 운송물류학과를 물류시스템학과로
2. 호텔외식조리대학 호텔관광경영학부를 호텔관광경영학과로
3.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과를 Endicott 자유전공학과로

제2조 (적용의 특례) ①이 개정 학칙(제11조, 제68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2. 28)

제1조 (시행일) ①이 개정 학칙(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②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재적생은 엔디컷 국제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제2조 (적용의 특례) ①이 개정 학칙(제68조제2항)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5. 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개정 학칙(제11조제2항)은 2017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07. 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0조, 제45조제1항 내지 제4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1. 30)

제1조 (시행일) ①이 개정 학칙(【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은 201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1. 엔디컷국제대학 국제경영학과를 매니지먼트학부 경영학전공으로
2. 엔디컷국제대학 금융·세무경영학과를 매니지먼트학부 금융·세무경영전공으로
3. 엔디컷국제대학 Endicott 자유전공학과를 Endicott 자유전공학부로
4. 엔디컷국제대학 중국듀얼디그리학과를 글로벌복수학위학과로

부 칙(2018. 10. 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5조, 제69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3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3. 05)

제1조(시행일) ①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1】, 【별표 2】, 【별표 4】는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본다. 단, 본인

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1. 철도물류대학 글로벌철도융합학과를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철도·교통물류학부로
2. 디지털미디어대학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를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로
3. 디지털미디어대학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미디어디자인전공과 영상콘텐츠전공을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으로
4. 보건복지대학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를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로
5.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6.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아동학부 아동복지전공을 글로벌아동교육학과로
7. 보건복지대학 스포츠건강재활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과 스포츠재활전공을 스포츠건강재활학과로
8. 보건복지대학 소방방재학과를 소방안전학부로
9. 호텔외식조리대학 글로벌조리학과를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조리학과로
10. 호텔외식조리대학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를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로
11. 호텔외식조리대학 글로벌외식창업학과를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외식창업학과로
12. 호텔외식조리대학 외식조리학부 외식산업경영전공을 외식·조리경영전공으로
13. 엔디컷 국제대학 글로벌복수학위학과를 국제학부 글로벌복수학위전공으로

제2조(적용의 특례) ①제8조1항 및 제9조2항 및 제29조1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해당 입학생과 동일한 학년으로 편입학하는 학생은 편입학한 연도부터 적용한다.

②2018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및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3.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한다.

1.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외식조리영양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언어치료전공, 보건의료경영학과의 소속 학생(학과명 변경 시 학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변경된 학과명으로 적용 한다)
2. 복수학위과정(2+2 복수학위로 확정된 신입학생 및 협약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자, 학생군사교육단으로 선발된 자 및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③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신입학생의 졸업학점은 142학점으로 한다.

부 칙(2019. 04. 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별표 2-1】, 【별표 4-1】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디지털미디어대학 재적생은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디지털미디어대학 건축공학과는 철도물류대학 건축공학과로 한다.

②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단과대학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제3조(모집단위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으로 2020학년도에 통합되는 다음 각 호의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단과대학 및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1.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는 보건복지대학 보건의료경영학과로

부 칙(2019. 07. 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①이 개정 학칙 제33조2항은 2019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신입학생의 여름·겨울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최대 4학점까지로 한다.

부 칙(2019. 08. 0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개정 학칙 제65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5조의2, 제66조제1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12.11.16, 2014.01.22, 2014.04.21, 2014.05.16, 2014.11.03, 2015.12.31, 2016.10.28, 2017.02.28, 2018.01.30, 2019.03.05., 2019.04.23.)

단과대학별 설치학과(부)

철도물류대학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보건복지대학
철도경영학과	IT융합학부 (컴퓨터정보·보안전공*, 스마트IT·보안전공*)	보건의료경영학과
물류시스템학과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게임멀티미디어전공*,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물리치료학과
철도전기시스템학과	엔디컷 국제대학	사회복지학과
철도건설시스템학부 (철도건설전공, 해외건설전공)	매니지먼트학부 (경영학전공*, 금융·세무경영전공*)	글로벌아동교육학과
철도차량시스템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작업치료학과
건축공학과	Endicott 자유전공학부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호텔외식조리대학	국제학부 (글로벌복수학위전공*, 국제학전공*)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글로벌한식조리전공*, 외식·조리경영전공*)	미래기술학부 (기술경영학전공, 테크놀로지디자인학전공)	유아교육과
외식조리영양학부 (식품영양학전공, 바이오식품과학전공)	Sol International School	뷰티디자인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글로벌철도·교통물류학부 (글로벌철도시스템전공, 교통물류전공)	응급구조학과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안전공학전공)
솔브릿지경영학부 (Finance전공, Management전공, Marketing전공)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간호학과
	글로벌조리학과	교양교육원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글로벌외식창업학과	

★ 표시는 전공단위 모집임.

【별표 2】(개정 2012.11.16, 2014.01.22, 2014.04.21, 2014.05.16, 2014.11.03, 2015.12.31, 2016.10.28, 2017.02.28, 2018.01.30, 2019.03.05, 2019.04.23)

학과(부)별 학생정원

대학	학부·학과명		입학정원
철도물류 대학	철도경영학과		80
	물류시스템학과		40
	철도전기시스템학과		80
	철도건설시스템학부		70
	철도차량시스템학과		80
	건축공학과		40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IT융합학부	컴퓨터정보·보안전공	50
		스마트IT·보안전공	40
	테크노미디어 융합학부	게임멀티미디어전공	40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50
보건복지 대학	보건의료경영학과		40
	물리치료학과		50
	사회복지학과		50
	글로벌아동교육학과		30
	작업치료학과		55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50
	스포츠건강재활학과		50
	유아교육과		42
	뷰티디자인경영학과		50
	응급구조학과		50
	소방안전학부		62
	간호학과		80
호텔 외식조리대학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100
		글로벌한식조리전공	50
		외식·조리경영전공	40
	외식조리영양학부		60
	호텔관광경영학과		60
엔디컷 국제대학	매니지먼트학부	경영학전공	30
		금융·세무경영전공	30
	글로벌비즈니스학과		30
	Endicott 자유전공학부		35
	국제학부	글로벌복수학위전공	20
		국제학전공	20
	미래기술학부		30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솔브릿지경영학부		80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철도·교통물류학부		30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30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30
	글로벌조리학과		70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50
	글로벌외식창업학과		30
	계		2,004

【별표 3】(개정 2011.11.28, 2012.01.16, 2013.04.19, 2014.01.22, 2015.02.28, 2015.12.31, 2017.02.28, 2018.01.30, 2019.03.05)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단위 : 명)

대학원명칭	학위과정	설치학과	모집정원
대학원 (일반)	석사	경영학과	10
		철도시스템학과	
		복지·상담학과	
		언어청각재활학과	
		솔브릿지국제경영학과	
	박사	경영학과	14
		철도시스템학과	
		복지·상담학과	
철도융합대학원 (특수)	석사	철도전기시스템공학과	27
		철도건설시스템학과	
경영대학원	석사	경영학과	19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건강재활학과	27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석사	식품조리과학학과	6
		외식·조리학과	
		TESOL-MALL학과	
Culture-Technology 융합대학원	석사	공학·디자인융합학과	7
합계			110

【별표 4】(개정 2014.01.22, 2014.04.21, 2014.05.16, 2014.11.03, 2015.12.31, 2016.10.28, 2017.02.28, 2018.01.30, 2019.03.05, 2019.04.23)

학부(과)별 학사학위

대학	학부·학과명		학위명
철도물류 대학	철도경영학과		경영학사
	물류시스템학과		공학사
	철도전기시스템학과		공학사
	철도건설시스템학부		공학사
	철도차량시스템학과		공학사
	건축공학과		공학사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IT융합학부	컴퓨터정보·보안전공	공학사
		스마트IT·보안전공	공학사
	테크노미디어 융합학부	게임멀티미디어전공	공학사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예술학사
보건복지 대학	보건의료경영학과		경영학사
	물리치료학과		보건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글로벌아동교육학과		문학사
	작업치료학과		이학사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이학사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체육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뷰티디자인경영학과		예술학사
	응급구조학과		보건학사
	소방안전학부		공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호텔 외식조리대학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경영학사
		글로벌한식조리전공	경영학사
		외식·조리경영전공	경영학사
	외식조리영양학부		이학사
	호텔관광경영학과		경영학사
엔디컷 국제대학	매니지먼트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금융·세무경영전공	경영학사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경영학사
	Endicott 자유전공학부		-
	국제학부	글로벌복수학위전공	언어학사
		국제학전공	사회학사
	미래기술학부		공학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솔브릿지경영학부		경영학사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철도·교통물류학부		공학사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예술학사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경영학사
	글로벌조리학과		경영학사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경영학사
	글로벌외식창업학과		경영학사